

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0. 9. 29 규칙 제1243호
일부개정 2025. 6. 5 규칙 제1321호
일부개정 2026. 3. 27 규칙 제134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」에 따른 통·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.

② 통장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동장은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통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한다. <개정 2025. 6. 5>

④ 통장은 반장을 두고자 하는 경우,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반장을 추천한다.

⑤ 동장은 통장 위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, 통·반장의 위·해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위·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

⑥ 동장은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3조(통장심사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5. 6. 5>

②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추천한다. 다만, 심사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6. 5>

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. <개정 2025. 6. 5>

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

1. 통장지원자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단체, 동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
 2. 통장지원자와 친·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 3.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
- ④ 통장지원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25. 6. 5>
- ⑤ 위원이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<개정 2025. 6. 5, 2026. 3. 27>
- [제목개정 2025. 6. 5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「광명시 통반 운영 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칙 <2025. 6. 5 규칙 제132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6. 3. 27 규칙 제134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6. 3. 27>

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(제3조 관련)

심사대상자(동 통)

성 명		성 별		생년월일	
주 소			연락처	(자 택)	
				(핸드폰)	

심사기준 및 심사결과

항 목	심 사 기 준	배점	특점	심사 착안사항
거주기간 (15)	10년 이상	1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 (주민등록 기준) ※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 (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)
	5년~10년 미만	13		
	3년~5년 미만	11		
	3년 미만	9		
직장여부 (15)	없음	1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장임무수행(회의참석 등)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
	있음(자영업)	10		
	있음(직장인)	5		
상훈 (5)	도지사 이상	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(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)
	시장	3		
	기타 기관장	1		
봉사활동 (15)	150시간 이상	1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※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(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)
	100시간~150시간 미만	12		
	50시간~100시간 미만	9		
	50시간 미만	6		
	없음	0		
면 접 (50)		5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관, 직무 수행 능력, 사명감, 지역 관심도, 동정 참여 의욕도, 인품 등을 종합하여 심사 ※ 심사위원의 면접점수 평균
가 점 (경력사항)	통장 경력이 없는 사람	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명시에서 통장으로 위촉된 적이 없는 사람 · 광명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및 참여
	기후의병 활동	2		
가 점 (교육이수)	10시간 이상	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(인정분야 : 탄소중립, 정원도시, 자원순환, 사회적경제, 자치분권, 도시재생) ※ 광명e지(평생학습통합플랫폼) 또는 주관 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
	5시간~10시간 미만	3		
	5시간 미만	1		
감 점 (지방세체납)	500천원 이상(5건)	-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. ※ 기준일 : 통장모집 공고일
	100천원 이상~500천원(4건)	-8		
	50천원 이상~100천원 미만(3건)	-6		
	10천원 이상~50천원 미만(2건)	-4		
	10원~10천원 미만(1건)	-2		
	총 계	100		
작 성 자	담당자 ○○○(서명 또는 인)	확 인 자 (심사위원)		위원장 ○○○(서명 또는 인) 위원 ○○○(서명 또는 인) 위원 ○○○(서명 또는 인) 위원 ○○○(서명 또는 인) 위원 ○○○(서명 또는 인)

□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

○ 면접대상자(동 통)
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연락처	(자 택)
			(핸드폰)

○ 면접기준 및 면접결과

심 사 항 목 (비 율)	배점 기준	배점(점)	특점	비 고 (인정조건 등)
1. 국가관,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	우수	8~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관, 역사 인식 등 · 통장 사명감 · 지원동기 등
	보통	4~7		
	미흡	0~3		
2.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, 시 및 동 현황 인지도	우수	8~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정 및 지역현안 사항 관심도 · 시 및 동 현황 인지도 · 지역 현안사항 인지도 등
	보통	4~7		
	미흡	0~3		
3. 동정 참여 의욕도	우수	8~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장 역할 수행 태도 및 의지 · 시·동 행정 추진 의지 · 주민화합 방안
	보통	4~7		
	미흡	0~3		
4. 통장 직무 수행 능력, 주민 통합 및 통솔력	우수	8~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· 다양한 상황발생시 대응력 · 주민갈등 시 역할 등
	보통	4~7		
	미흡	0~3		
5. 인품, 태도, 주민 및 유 관단체 등과 융화력, 기 타 사항	우수	8~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품, 활동력 · 단체 생활 융화력 및 지역 여론 등 · 기타 사항
	보통	4~7		
	미흡	0~3		
총 계		50		

심사위원

(서명 또는 인)

※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

※ 면접 시 성별, 종교, 혼인 여부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사항은 배제

[별지 제2호서식]

반장 위촉 추천서

반장 위촉 추천대상자

연번	구분	소속 (통/반)	인 적 사 항				
			성명	생년 월일	성별	주소	연락처
1	반장						
2							

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」 제6조 및 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의거 상기인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추천인 : ○○동 ○통장 (서명 또는 인)

광명시 ○○동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위 축 장

소 속: 광명시 ○○○동 ○통

주 소:

성 명:

생년월일:

귀하를 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」 제5조 및 「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 제5항에 의거 ○○동 ○통장으로 위촉합니다.

【위촉기간 : ○○년 ○월 ○일 ~ ○○년 ○월 ○일】

20 년 월 일

광 명 시 ○ ○ 동 장

※ 바탕은 시마크를 표시한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재 직 증 명 서

제 호

인적 사항	성명	한글		주민등록 번호	
		한자			
	주소	경기도 광명시			
재직 사항	소속	○○○동			
	직위	통장			
	기간	부터 현재 (년 월)			
용도	(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)				

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○ 동 장

담당자	
연락처	